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19년 4월 30일

국 무 총 리 이 낙 연

국 무 위 원
행정안전부
장

진 영

●대통령령 제29720호

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3의 제목 “(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)”를 “(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등은 법 제32조제6호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.

별표 6 제6호의 위반행위 및 행위자란 중 “법 제32조”를 “법 제32조(제6호는 제외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표 제6호의2를 제6호의3으로 하며, 같은 표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표 비고 제4호 중 “제6호”를 “제6호 및 제6호의2”로 한다.

6의2. 법 제32조제6호를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가.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 나. 가목 외의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	제160조제3항	1) 승합자동차등: 9만원(10만원) 2) 승용자동차등: 8만원(9만원) 1) 승합자동차등: 5만원(6만원) 2) 승용자동차등: 4만원(5만원)
--	----------	---

별표 8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3.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차·주차 금지 위반	제32조제6호	1) 승합자동차등: 9만원 2) 승용자동차등: 8만원 3) 이륜자동차등: 6만원 4) 자전거등: 4만원
---	---------	--

별표 8 제29호의 범칙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29. 정차·주차 금지 위반(제10조의3 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차·주차 금지 위반은 제외한다)
--

부 칙

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신속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 등은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소방용수시설,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, 해당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승합자동차 9만원, 승용자동차 8만원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19년 4월 30일

국 무 총 리 이 낙 연

국 무 위 원
산 업 통 상
자원부장관

성 윤 모

●대통령령 제29721호

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
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4호 중 “산업재산권”을 “지식재산권”으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자금의 지원) 법 제17조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
2.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가맹사업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외에 저작권도 보호시책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정부가 가맹사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 범위 중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는 한편,

가맹사업의 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및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